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1호
----------	------

제출연월일	2005. 8. 26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동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2004년에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안 제27조의2)
- 나. 적용일 : 2005년 6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안 부칙)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함.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2의 규정은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27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2의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②(적용시한) 제27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p>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